

제311회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2012년9월19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창중) 인사청문경과보고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진성) 인사청문경과보고
3. 헌법재판소 재판관(강일원) 선출안
4. 헌법재판소 재판관(김이수) 선출안
5. 헌법재판소 재판관(안창호) 선출안
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8건)

부의된 안건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창중) 인사청문경과보고 1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진성) 인사청문경과보고 1
3. 헌법재판소 재판관(강일원) 선출안(의장 제의) 2
4. 헌법재판소 재판관(김이수) 선출안(의장 제의) 2
5. 헌법재판소 재판관(안창호) 선출안(의장 제의) 2
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8건)[각 소관 상임위원장(국회운영·법제
사법·외교통상통일·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지식경제·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 제외) 제출] 4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 o 의사진행의 건 5
 - o 5분자유발언 7

(14시12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창중) 인사청문 경과보고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진성) 인사청문 경과보고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창중) 인사청문경과보고,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진성) 인사청문경과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청문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영선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창중) 인사청문요청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진성)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과 1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후보자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헌법적 쟁점과 각종 사회적 현안 등에 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과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등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각 후보자별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창중)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자녀와 증여로 보여질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를 한 부분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과 법관으로 재직 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전혀 없어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일부 위원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 위법성 여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의 기관 간 권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 방안, 5·16의 성격, 유신헌법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질서의 수호 및 국민 기본권 보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다양한 사회적·헌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높은 식견과 명확한 소신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에 비추어 후보자에게 일부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후보자가 27년 동안 일선 법원의 판사, 지원장, 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풍부한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지역 법관 출신으로서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부족하나마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진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경험이 없는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일부 위원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 재직 시에 선거 당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후보자의 학력을 직권으로 수정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의혹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에 재정합의부 신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부장판사를 배치한 부분 등이 부적절하고, 사형제에 대한 현재의 논란을 과거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30년 동안 일선 법원의 판사, 지원장,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판 실무 및 사법행정 분야에서 깊은 이해와 식견을 쌓아 온 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 헌법재판소 재판관(강일원) 선출안(의장 제의)
 - 4. 헌법재판소 재판관(김이수) 선출안(의장 제의)
 - 5. 헌법재판소 재판관(안창호) 선출안(의장 제의)
- (14시19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강일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 재판관(김이수) 선출안,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안창호) 선출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유성엽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성엽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김이수)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안창호) 선출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강일원)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과 13일 그리고 1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후보자별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와 답변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각급 법원의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원장 등으로 30년간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개념을 선도적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청문회의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청문회의장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판사 재직 시 사형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중요한 현안에 대한 소신이 모호하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후보자가 행한 군 검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군 판사로 참여한 여러 재판의 판결을 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수행 역량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청문위원들은 사형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사유를 통해 누구나 찬반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후보자의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 사람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직무행위는 비난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법무부 인권과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적 소양을 쌓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소년법, 상습범 말 씻어주기 등 교화활동과 종교단체 기부활동을 하였으며, 청문회의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소신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과 증여세법을 위반하였고, 오산 고시원 건물

매매예약, 서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하여 투명하지 못한 재산관리 문제가 있으며, 중부세 납부 거부 이의신청에 관한 진의 문제와 후보자 장남의 군복무 중 과도한 휴가일수 문제 등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였고, 그 외 답변 과정에서 특권의식이 보이는 등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및 오산 고시원 건물 매매예약 등 재산 관련 문제, 후보자 장남의 휴가일수 문제 등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문회의장에서 수차에 걸친 반복된 설명으로 충분히 해명하였으므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일원 후보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일부 문제점들에 대하여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으로 27년간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풍부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있고, 군정보기관에 의하여 간첩으로 몰려 장기 복역한 시민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1심보다 국가 책임을 대폭 상향 인정하는 등 그동안의 재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반적인 답변 등에 비추어 후보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안이나 헌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깊은 식견에 바탕을 둔 소신 있는 답변태도를 견지하였고, 아울러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청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한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며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5항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의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을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이완영 의원, 박민수 의원, 유은혜 의원, 이상 네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투표는 세 건의 선출안을 일괄하여 실시하는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확인하신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될 것입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31분 투표개시)

○의장 강창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5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강일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259표, 부 13표, 기권 2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강일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김이수)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201표, 부 59표, 기권 14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김이수)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안창호) 선출안에 대하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183표, 부 85표, 기권 6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안창호)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8건)[각 소관 상임위원장(국회운영·법제사법·외교통상통일·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지식경제·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제외) 제출]

(15시00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4호의 규정에 따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김기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서 협의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

신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총 504개로서 작년보다 62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 포함되지 않았고 위원회별로 감사대상기관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보면 8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9개를 제안하여 작년보다 43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 포함되지 않았고 종전에 본회의 의결로 선정하였던 기관 중 일부가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8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8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3분)

○의장 강창희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의 건

(15시04분)

○의장 강창희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의원 사천·남해·하동의 여상규입니다.

먼저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는 제 지역구인 사천시의 수재 현장을 지금 둘러보고 계십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저의 수행 의견도 거절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전에 있는 헌법재판관 청문회 그리고 오후 본회의에 참석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아주 드물게 9월 수확기에 태풍이 3개나 우리 한반도를 통과했습니다. 덴빈과 불라벤은 호남과 충청지역 등 우리나라 서부지역을 강타해서 큰 피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바로 엇그제 지나간 산바는 제 지역구인 남해에 상륙해서 동쪽에 있는 영남과 강원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로나 교량 그리고 부두·방파제 이런 것들이 대파되었음은 물론이고, 가옥들도 파손 내지는 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창 익어가는 가을 곡식들과 과일들이 침수 피해를 입고, 특히 벼농사는 백화현상 그리고 과일농사는 낙과피해가 아주 큼니다. 어업 역시 가두리 양식장이 파손되는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양식어들이 폐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어민들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피해에 엄청난 좌절감을 겪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해 전의 상태를 회복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그런 도움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피해액이 우선 60억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국비도 50~8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군들은 아주 작은 복구비를 가지고 우선 응급복구만 하는 것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매년 태풍이 오거나 큰 비가 오면 재난이 되풀이되고 피해도 되풀이해서 발생하는 그런 악순

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어촌 지역에 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런 국비 지원 외에 이 농어민들을 위한 피해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되는 것은 기껏 대파비, 종자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70%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농약대 이런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지원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더 큰 절망을 가중시켜 줄 뿐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도개선이 되기 전에 저는 이런 어려운 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전 국민적 성원 동참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의원 한 분당 20만 원씩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금 대열에 우리 민주당 등 야당 의원님들도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수재 농어민들을 위한 이런 성금 모금이 이루어져야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전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회의 노력이 여유 있는 국민들의 동참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김영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진도·완도 출신 김영록 의원입니다.

이번 사상 유례없는 세 번의 태풍으로 우리 농어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FTA로 인해서 또 한우농가는 한우가격이 반 가격이 돼서 대단히 어려운데 옆친 데 댕친 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재빠르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농어촌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은 세 번에 걸쳐서 전

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자금을 특별보증으로 3억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태풍 피해 본 분들은 3억 원의 정책자금으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미 5억씩, 10억씩 빚을 지고 있는 농어민들이 대형화돼서 많기 때문에 특별보증 3억 원을 대폭 늘려서 10억 정도, 5억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수산증·양식 시설이 대형화되어 있고, 농업도 대규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나도 주택 플러스 농어업 피해 또 여러 가지를 합치면 10억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정부 피해 지원 기준이 5000만 원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3억 원이었는데 정부가 임의로 5억 원으로 낮췄는데, 모든 것이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대로 3억으로 하든지 최소한 2억 이상으로 피해 지원이 조정되어야 실제 우리 농어민이 살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벼농사 피해가, 이번에 백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거의 농경지 면적의 10% 가까이 됩니다마는 아예 못 먹는 바닷가의 농가는 많습니다. 그런데 대파대가 ha당 110만 원인데, 이게 태풍 곤파스 때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태풍 곤파스 때에 준해서 농가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라 또 정부에서는 사료작물로 수매를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백수 피해 입은 벼를 사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a당 300만 원 정도, 타 작물 지원에 준해서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피해 복구 기준이 실복구액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35%를 국가에 보전하는 것인데, 실제 복구비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3, 4일간 정전이 됐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 3, 4일간 정전이 됐다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 4일간 정전되다 보니까 수산증·양식장 고기 키우는 데 비상발전기로 하루 정도는 가

능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비상발전기가 전부 다 타 버렸고, 또 놓여준 냉동·냉장시설들이 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정전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번 태풍은 3, 4일간이나 복구가 지연된 게 한전의 능력대응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정부에서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3, 4일간 정전이 되면서 양수장이 가동이 안 돼서 벼에 침수피해가 3, 4일간 났습니다. 침수가 3, 4일 되면 벼의 80% 수확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지원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배수개선사업이랄지 용배수로개선사업이 그동안 4대강사업만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의 피해가 이번에 막대하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내년도 예산분은 집중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 농업 예산을 8000억 깎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1조 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배수개선사업 또 용배수로개선사업에 집중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기준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농어민이 느낄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시설복구 기준을 마련을 해서 농어촌에 실질적인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15시16분)

○의장 강창희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국가정책도 강남 스타일을 닮아 가느냐에 대한, 국가에 대한 경고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역대 정권들의 정책 행태를 보면 중앙정부나 서울시 할 것 없이 모두 외형적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날 강남·북 간에, 한수 이북과 이남 간

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아주 크게 시민들이 분노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KTX 노선 기종점 지역과 관련해서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수서까지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왜 의정부까지 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강북권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 못 하게 하느냐, 이것 역시 강남·북 차별의 발로 의식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강북에 차지하는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노원·도봉·강북구 등 여기에는 무려 350만 인구가 살고, 경기도 북부의 남양주·구리·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등에는 약 300만의 주민이 삽니다. 바로 국토해양부는 이런 것을 모두 간과한 채 무조건 강남에 퍼붓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서울시의 강남권 집중 육성 정책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서울시가 소위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토건사업’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조용하더니 요새 와서 무슨 개발 바람이 불었는지 소위 강남 삼성동 부도심 일대를 종합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특혜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것 역시 강남·북 차별 의식이 여전히 발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강남권에 대한 또 다른 특혜와 강북권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과거에도 지속돼 왔습니다. 웃지 못할 사항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강남에 주공아파트가 5만 가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20년 만에 모두 허물고 재건축을 해 줘서 그쪽에 엄청난 부를 남겨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 끝나자마자 강북권에는 ‘40년 만에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의 주민들은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동부간선도로’라고 많이 타 보셨지요? 이것을 한 차선 확장하는 데 무려—그 6km뿐이 안 됩니다—이것을 15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국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6km를 확장하는데 15년이 걸리다니, 이 지역에는 정치 지도자도 없고 국가가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요새 최근에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하면 로맨스고 강북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KTX 노선은 평택에서 수서까지 올 게 아니라 강북 의정부까지 연장해서 강북권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 줘야 된다, 둘째 서울시 삼성동 부도심 종합개발 계획보다도 더 강북권에 그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계획이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무려 7만 5000평입니다. 이곳에 강남 COEX와 같은 이런 계획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프로젝트들은 향후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강·남북 차별을 철폐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여야가 많은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도권외의 강북, 경기 북부, 서울 강북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강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을 정청래입니다.

프랑스는 퐁레랑스의 나라입니다. 우리말로 관용의 나라입니다. 문화예술의 강국 프랑스는 그러나 이전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나치에 부역했던 그런 불행한 과거와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독립 이후에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문화예술의 강국, 퐁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은 나치헌법 무효화를 통해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2009년 독일 의회에서는 나치법원이 내렸던 수만 건의 반역죄와 유죄판결을 일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은 전범국가로서의 굴레를 벗고 지금 통일국가로 되어 EU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년 전인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헌법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유신헌법은 국민주권을 찬탈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대통령 추천권과 선출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투표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물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까지 거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천부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유신헌법은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회기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신헌법은 사법부를 또한 무력화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긴급조치 1조, 4조, 9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자,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는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또한 유명한 문구입니다.

저는 유신헌법을 들춰내서 소모적인 국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욕의 역사, 부끄러웠던 유신헌법 선포 4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 10월 유신헌법 무효화 결의안을 자정 차원에서 선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안기부의 국정원 시절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자정 차원의 노력 또한 지난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화뇌동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 스스로의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의 밝은 비전을 제시해 줄 때가 왔습니다.

인혁당 판결을 뒤집는 듯한 두 개의 판결 발언이라거나 그리고 5·16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에 이제 중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인사청문회에서도 분명히 인혁당은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5·16은 쿠데타였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의 발목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을 이곳 국회에서 선언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힘찬 19대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만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갑 출신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인민혁명당, 유신 그리고 안철수 원장—조금 전에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아시지요? 호동왕자가 둘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호동왕자가 첫째 부인, 왕비의 모함을 받고 자살을 합니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호동왕자는 “내가 해명을 하면 어머니, 즉 첫째 부인의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고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인데 이것을 효라고 말할 수 있

겠나?”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유신, 잘못된 것 모릅니까? 박근혜 후보가 모를 것 같습니까? 꼭 자기 입으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옥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후보 몇 살입니까? 10대, 20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부인 권양숙 여사 부친의 빨치산 좌익 문제가 거론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나보고 지금 내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해야 된다? 문제인 후보가 얘기하기를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관련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과를 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 한지 아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 2004년 8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했을 때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하신 데 대해서 딸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기념관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과거 일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내가 못 한 일을 박 대표가 해 달라. 박 대표가 제일 책임자다’라고 화답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또 지난 2007년 7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청문회에서도 “유신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희생하셨던 분들과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박근혜 후보는 회피하지 않고 ‘사과한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3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 관련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정말 여러 얘기를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통합당과 연대를 너무 당연시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폐기한다고 한 민주통합당이 지금 와서는 안철수 원장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민주당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거대한 한 축인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게 우리 신익희 선생의, 송진우 선생의 민주당 맞습니까?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닥치고 연합’도 아니고 정말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꼬리 잡기 정치를 이제 끝내고 정책으로 대결합시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의원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 장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우리 헌법 제34조1항의 선언 앞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은 더욱 비참하기만 합니다.

경비용역 회사 아르바이트로 내 아버지 같은, 내 형님 같은 노동자들에게 각목을 휘둘러서 치솟는 등록금을 마련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 형제도 노동자입니다. 이걸 비극입니다.

할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 여름 폭염 아래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28세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샘작업을 하면서 용광로에서 일하다가 용광로가 뒤집혀 녹아내린 쇠물에 28세, 29세의 두 청년이, 한번에 그 젊은 삶이 정말 하염없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쌓아 올린 미분양 아파트들, 그 마천루를 뒤로 하고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취업준비생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들은 절망과 고독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고, 세상은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에만 주목하지만 이 젊은 청년들은 이미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주목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그들을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 청년실업률이 25%에 달하고 청년들은 단지 구직자라는 그런 딱지를 달고 있지만 실상은 생존을 위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직자가 아닌 구직노동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 달을 일해서 먹을

것, 고시원 생활비, 기본적인 생계비만 지출하면 이미 통장 잔고는 바닥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믿기 싫고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2012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여당의 대통령후보도 그리고 전직 노동부장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최저임금, 바로 시급 4580원입니다. 누군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이끌어야 할 201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밥 한 끼가 5000원이 넘는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청년들의 실질임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시급 4580원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 여당 후보에게는 그렇게 작냐고, 5000원이 안 넘느냐고 이런 금액일지 몰라도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아픔으로 새겨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가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경총은 헌법 위헌 운운하며 이 개정안이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 119조1항을 들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19조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재계는 바로 이 경제민주화 조항보다 기업의 경영 자유가 더 우선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1948년 처음으로 제정된 헌법의 경제조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재계가 이야기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는 사회정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이 아니라 이 전제 내에서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청년고용할당제 그리고 우리 당의 당론 발의이기도 한 이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으니 저는 경총과 청년들의 끝장토론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저는 경총이 이 제안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경총의 신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저 혼자 아닌 많은 청년들이 경총과 정말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판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18대 대통령선거가 90여 일 남았는데 저를 포함한 청년들은 대선 후보에게 그런 사회를 누가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젠 그들이 청년들에게 답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의원 통합진보당의 김미희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와 노동자들은 산별교섭 정상화, 의료인력 확충, 비정규직 해결을 촉구하며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전국의 여러 병원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측은 SJM 사태를 불러일으킨 노조 파괴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번에 노조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보건의료노조파업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주일 전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시지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임금 체불과 해고 그리고 직장폐쇄 등 병원 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삭발과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강제진압

방식으로 무차별 연행을 하여 비난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파업 85일째를 맞고 있는 시지노인전문병원을 대구시로부터 수탁한 운경재단은 횡령과 탈세로 고발되어 있고 의료인력 허위 신고와 건강보험 의료수가 부당청구 문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운경재단 이사장의 전횡과 불법행위로 인해 파업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또다시 운경재단과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대구 시지병원 사태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의 시지병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 목동 소재 이화의료원에서는 사측의 일방적인 협상 거부로 노조가 오늘로 1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화의료원 노조는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육시설 확충 등 지극히 정상적인 교섭내용으로 사측에 협상을 제안하였고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보건의료노조가 교섭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화의료원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병원 중 임금이 최하위 수준이며 명문 여성사학을 표방하면서도 유일하게 직장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근무시간도 지켜지지 않아 직원들은 심한 피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소홀과 대형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산별교섭이 노사협상의 패턴으로 정착된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을 핑계로 노사협상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산별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 주십시오.

끝으로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들에게 공평하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토지주택공사에게 촉

구합니다.

성남시 1단계 재개발 사업지구 세입자 110명은 2007년 4월 12일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주거이전비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토지구획공사 측은 소송제기자 중 상고를 포기한 110명에 대해서 기관력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얼마 전 국회를 관람하려던 한 단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관람이 거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사무처가 동원한 경찰 병력에 의해 경내 출입까지 봉쇄당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다가 씩씩한 심정으로 발길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사무처는 저의 소개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이화의료원 140명 노동자들의 국회 관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까지 봉쇄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노동자이고 파업 중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시설보호를 위해 출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경내에서 시위를 할 숨은 의도를 가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만 진행되는 파업 일정의 단조로움을 이겨보고자 단체로 나들이를 하는 심정으로 국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국회, 하지만 자신들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은 국회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기대와 설렘을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140명의 간호사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준 노동조합에 대한 차가운 기피증과 반감만을 온몸으로 뒤집어쓴 채 무려 2시간 30분을 서서 기다리다가 허탈하게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단체 관람을 주선한 저는 국회사무처의 취소와 거부 사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일 수 있다는 점을 사무총장께 거듭 호소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관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민에게 최대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닫힌 국회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질서유지와 시설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통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금기시하고 범죄시하는 잘못된 편견과 예단에 따른 국회사무처의 이번 처사는 결코 그와 같은 불가피성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보좌해야 될 사무처가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권능을 무력화시킨 행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국회법의 그 어떤 규정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국회 단체참관 신청을 낸 뒤 경내에서 시위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질서유지와 시설보호를 위해 참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무처 내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은 과거의 경험에만 근거해서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파업 중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계속 국회 단체관람에서 배제되어야만 합니까? 국회사무처의 처사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의 발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될 사무처가 노동조합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파업을 범죄 행위로 여기는 듯한 헌법 파괴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시각이 억울하게 해고당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경찰특공대를 투입시키고 경비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작금의 살풍경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보증하고 초청한 단체의 국회 출입이 봉쇄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이 불온시되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지배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기관이라 자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보증이 의원을 보좌해야 할 사무처에 의해서 이처럼 무시된다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파업을 불온시하고 노동조합을 범죄 집단으로 간주한 국회사무처의 이런 잘못된 행위를 기록하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윤원중 사무총장께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노동자들의 국회 관람 거부와 관련 당사자들과 국민들께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헌법 파괴 행위인지도 모르고 있는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경호기획관을 포함한 실무 책임자들에게 대해서는 직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사무처에 의해 무산된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국회 방문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 의원(27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노철래
노회찬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욱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연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균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개회 시 재석 의원(213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노회찬 도종환
 류성걸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범계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예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균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윤석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문현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40인)

강길부 강동원 강창희 김관영
 김기준 김기현 김동완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성주 김영록
 김재연 김재윤 김제남 김형태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박기춘
 박대동 박원석 부좌현 서영교
 양승조 이상규 이석기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장우 이종진
 임내현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진성준 함진규 홍지만

○출장 의원(1인)

정병국

○청가 의원(13인)

김광진 김근태 김태호 문재인
 박근혜 박수현 박혜자 백근기
 정세균 조명철 조현룡 최동익
 한기호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윤원중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

○의원 당직 변경

의원명	선거구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통합 진보당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2012 9. 13
노회찬	서울 노원 병			
심상정	경기 고양 덕양갑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	이미경	민주통합당	2012. 9. 14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	김희정	새누리당	2012.
	남인순	민주통합당	9. 14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아동·여성 대상성폭력 대책특별	김희정 강은희 권성동 김현숙 류성걸 민현주 박인숙 신의진 윤재욱	새누리당	2012. 9. 10
	이미경 남인순 서영교 유기홍 유승희 진선미 최민희 최원식	민주 통합당	
	문정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안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문병호·김동철·김재윤·김현미·민홍철·박남춘·우원식·유기홍·유대운·이미경·홍영표 의원 발의)

9월 1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김춘진·김영록·홍문표·강기정·김관영·이상직·김근태·김우남·김윤덕·하태경·윤명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발의)

(2012. 9. 11 설훈 의원 외 127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발의)

(2012. 9. 11 홍종학 의원 외 127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김성주·최동익·최원식·박홍근·한정애·이원욱·신장용·홍익표·신경민·설훈·이상직·남인순·은수미·정호준·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이상민·윤후덕·유대운·조정식·최민희·배기운·민홍철·이미경·정성호·최동익 의원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이상민·윤후덕·유대운·조정식·최민희·배기운·민홍철·이미경·정성호·최동익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박홍근·장병완·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김현·배기운·김영주 의원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1 정부 제출)

이상 4건 9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김현·배기운·김영주 의원 발의)

9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김상희·우윤근·이미경·한정애·박홍근·우원식·김재윤·조정식·원혜영·이찬열·유승희·김경협 의원 발의)

9월 1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노영민·윤후덕·이상민·이원욱·오영식·김영환·우윤근·김성곤·진성준·인재근·김진표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김승남·배기운·김동철·최동익·문병호·최민희·전정희·김우남·유기홍·김성곤·유대운·박혜자·민홍철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1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이재오·정몽준·김재경·권성동·김용태·이한구·이군현·신성범·전순옥·송광호 의원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김기선·이현재·이이재·이에리사·김태원·송광호·윤명희·민병주·박민식·이현승·황영철·박대출·손인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조경태·배기운·전병헌·백재현·서영교·김미희·박홍근·민홍철·김성곤·강동원·최원식·김경협·유성엽·홍종학·김재윤·정성호·김승남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길정우·정문헌·유승우·신경민·김을동·안홍준·정성호·김장실·박인숙·김동완·오제세·류지영·남경필·김희정·함진규·한선교·이에리사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김관영·한정애·이상직·진성준·윤관석·김춘진·유성엽·이석현·원혜영·안민석·노영민·김용익·박기춘·홍의락·배재정·양승호·전정희·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이한성·정희수·이만우·김장실·박인숙·김상훈·김희국·이종진·주영순·이에리사 의원 발의)

9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1 정부 제출)

9월 1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9. 11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1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류지영·장윤석·고희선·최민희·최봉홍·전정희·강은희·김정록·안홍준·홍문중 의원 발의)

9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1 조경태·문병호·배기운·전병헌·백재현·박홍근·김성곤·강동원·유성엽·홍종학·김재윤·정성호 의원 발의)

9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조경태·문병호·배재정·전병헌·백재현·박홍근·김민기·민홍철·강동원·김경협·유성엽·홍종학·신장용·정성호 의원 발의)

9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조경태·이미경·배기운·전병헌·박홍근·민홍철·김성곤·강동원·유성엽·홍종학 의원 발의)

9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2. 9. 11 기획재정부위원장 제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조경태·이미경·배기운·전병헌·김미희·박홍근·강동원·김경협·김재윤·정성호 의원 발의)

9월 12일 농림수산물위원회에 회부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이낙연·김용익·홍영표·오제세·이상민·전정희·김우남·이미경·배기운·문병호·유대운·신경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박원석·강동원·김미희·김제남·김현미·노회찬·박홍근·서기호·심상정·전순옥·정진후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유정복·신경립·최봉홍·김동완·김정록·신의진·손인춘·윤명희·유재중·이학재·이재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유정복·신경립·최봉홍·김동완·김정록·신의진·손인춘·윤명희·유재중·

이학재 · 이재영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진식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윤진식 · 이한성 · 정희수 · 金永柱 · 조현룡 · 정문헌 · 이우현 · 윤명희 · 이만우 · 강길부 · 송광호 · 성완중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신학용 · 이찬열 · 유대운 · 김우남 · 이미경 · 홍종학 · 이명수 · 민홍철 · 김성곤 · 신경민 · 이에리사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백재현 · 이찬열 · 이용섭 · 김현미 · 박남춘 · 박수현 · 장병완 · 변재일 · 신장용 · 강기정 · 최재성 · 전해철 의원 발의)

9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김희정 · 김한표 · 류성걸 · 이재영 · 길정우 · 민현주 · 박인숙 · 권성동 · 김현숙 · 윤재옥 · 강은희 · 류지영 · 이자스민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김희정 · 김한표 · 이자스민 · 이재영 · 길정우 · 민현주 · 박인숙 · 권성동 · 김현숙 · 윤재옥 · 강은희 · 류지영 · 류성걸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김희정 · 김한표 · 이자스민 · 이재영 · 길정우 · 민현주 · 박인숙 · 권성동 · 김현숙 · 윤재옥 · 강은희 · 류지영 · 류성걸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4일 아동·여성대상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윤명희 · 민병주 · 이자스민 · 신경림 · 조명철 · 민현주 · 홍문표 · 안덕수 · 신성범 · 이완영 · 박인숙 · 강은희 · 김근태 · 송광호 · 이에리사 · 이장우 · 나성린 · 김명연 · 김기선 · 이현재 · 김현숙 · 손인춘 · 정희수 · 홍지만 · 김진태 · 최봉홍 · 김춘진 · 김영록 · 이채익 · 고희선 의원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2 정부 제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유정복 · 신경림 · 최봉홍 · 김동완 · 김정록 · 신의진 · 손인춘 · 윤명희 · 유재중 · 이학재 · 이재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권성동 · 김희정 · 김한표 · 이재영 · 길정우 · 민현주 · 박인숙 · 김현숙 · 윤재옥 · 강은희 · 류지영 · 류성걸 · 이자스민 의원 발의)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이한성 · 정희수 · 김태원 · 이만우 · 유승우 · 김장실 · 박인숙 · 이종진 · 김재원 · 김희국 · 이에리사 의원 발의)

9월 1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문병호 · 박수현 · 서영교 · 박남춘 · 배기운 · 김동철 · 홍영표 · 남인순 · 김재윤 · 오제세 의원 발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정희수 · 김광진 · 홍문표 · 이명수 · 김상훈 · 민홍철 · 주영순 · 이한성 · 심학봉 · 김태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정문헌 · 김정록 · 손인춘 · 한기호 · 김진태 · 김기선 · 염동열 · 김동완 · 박성호 · 황진하 · 정희수 · 김재원 의원 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박성호 · 전병헌 · 이만우 · 이재영 · 김영주 · 김태원 · 서상기 · 최동익 · 박인숙 · 정성호 · 김장실 · 강기운 · 김동완 의원 발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원혜영 · 조정식 · 이낙연 · 김용익 · 한정애 · 김성주 · 김민기 · 배기운 · 최동익 · 유대운 · 김미희 · 배재정 · 이찬열 · 문병호 · 조경태 · 최민희 · 심상정 · 민병두 · 김동철 ·

오영식 · 최원식 · 심재권 · 김현미 · 김태년 ·
신경민 · 임수경 · 김태원 · 전순옥 · 노회찬 ·
김영주 · 김선동 · 서기호 · 김성곤 · 추미애 ·
김경협 · 박홍근 · 전정희 · 박지원 · 이미경 ·
이인영 · 윤관석 · 은수미 · 인재근 · 도종환 ·
유인태 · 강동원 · 김관영 · 문희상 · 김제남 ·
홍종학 · 김기준 · 이용섭 · 한명숙 · 민홍철 ·
정청래 · 김재윤 · 박병석 · 정성호 · 정의화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김영우 · 김을동 · 이에리사 · 이한성 ·
심재철 · 김태원 · 정성호 · 이만우 · 황진하 ·
윤명희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2 신학용 · 유대운 · 김우남 · 이에리사 ·
이미경 · 이명수 · 민홍철 · 김성곤 · 홍종학 ·
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3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문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정문현 · 이종진 · 이장우 · 이자스민 ·
한기호 · 이한성 · 박인숙 · 남경필 · 여상규 ·
안홍준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2 정희수 · 김광진 · 홍문표 · 이명수 ·
김상훈 · 민홍철 · 주영순 · 이한성 · 심학봉 ·
김태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
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전병헌 · 김용익 · 박수현 · 김승남 ·
이낙연 · 배재정 · 김운덕 · 이미경 · 최민희 ·
배기운 · 안민석 · 문병호 · 김성주 · 최동익 ·
김성곤 · 은수미 · 노웅래 · 김동철 · 서영교 ·
김미희 · 민홍철 · 백재현 · 김민기 · 강원동 ·
유은혜 · 김경협 · 도종환 · 홍종학 · 신경민 ·
유승희 · 정성호 · 김재윤 의원 발의)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주영순 · 이만우 · 정희수 · 김정록 ·
류지영 · 전정희 · 민현주 · 강은희 · 이한성 ·
김상민 · 최봉홍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한정애 · 김경협 · 김관영 · 김기준 ·
노영민 · 박기춘 · 배재정 · 서영교 · 심상정 ·
유승희 · 이미경 · 장하나 · 전정희 · 정진후 ·
진선미 · 홍영표 · 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2 신학용 · 이찬열 · 유대운 · 김우남 ·
이에리사 · 홍종학 · 이명수 · 이미경 · 민홍철 ·
김성곤 · 신경민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2 주영순 · 신동우 · 정성호 · 김정록 ·
박인숙 · 류지영 · 노철래 · 강기윤 · 정희수 ·
최봉홍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2 주영순 · 신동우 · 정성호 · 김정록 ·
박인숙 · 류지영 · 노철래 · 강기윤 · 정희수 ·
최봉홍 의원 발의)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유정복 · 신경림 · 최봉홍 · 김동완 ·
김정록 · 신의진 · 손인춘 · 윤명희 · 유재중 ·
이학재 · 이재영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유정복 · 신경림 · 최봉홍 · 김동완 ·
김정록 · 신의진 · 손인춘 · 윤명희 · 이학재 ·
이재영 의원 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진영 · 이윤석 · 김태원 · 원유철 ·
신동우 · 이한성 · 서용교 · 길정우 · 정갑윤 ·
여상규 · 이노근 · 남경필 · 신성범 · 서상기 ·
강석호 · 이현재 · 이재균 · 신의진 · 강은희 ·
강석훈 · 이우현 · 이자스민 · 김정록 · 안종범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진영 · 이노근 · 김세연 · 김동완 · 김태원 · 원유철 · 신동우 · 강은희 · 이한성 · 서용교 · 여상규 · 김을동 · 남경필 · 신성범 · 서상기 · 강석호 · 이현재 · 이재균 · 신의진 · 유기준 · 길정우 · 정갑윤 · 이자스민 · 주영순 · 강석훈 · 이우현 · 김정록 · 안종범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1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2. 9. 12 정무위원장 제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2. 9. 12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노회찬 · 정진후 · 박원석 · 김제남 · 심상정 · 강동원 · 서기호 · 이상규 · 김현미 · 김기식 · 민병두 · 우원식 · 진선미 · 김기준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노회찬 · 정진후 · 박원석 · 김제남 · 심상정 · 강동원 · 서기호 · 이상규 · 김현미 · 김기식 · 민병두 · 우원식 · 진선미 · 김기준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노회찬 · 정진후 · 박원석 · 김제남 · 심상정 · 강동원 · 서기호 · 이상규 · 김현미 · 김기식 · 민병두 · 우원식 · 진선미 · 김기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백재현 · 유대운 · 심재철 · 이찬열 · 전해철 · 조정식 · 조경태 · 강기정 · 노영민 · 정청래 의원 발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강석호 · 김한표 · 이명수 · 강기윤 · 이노근 · 박상은 · 이이재 · 조현룡 · 윤진식 · 안효대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변재일 · 신장용 · 조경태 · 박범계 ·

정우택 · 윤진식 · 오제세 · 경대수 · 이장우 · 노영민 · 박병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노회찬 · 정진후 · 박원석 · 김제남 · 심상정 · 강동원 · 서기호 · 이상규 · 김현미 · 김기식 · 민병두 · 우원식 · 진선미 · 김기준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하태경 · 나성린 · 이진복 · 김세연 · 김춘진 · 서용교 · 서병수 · 김도읍 · 이재균 · 전하진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유일호 · 이한성 · 김태호 · 조원진 · 박대동 · 신동우 · 류지영 · 나성린 · 이채익 · 류성걸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조경태 · 백재현 · 김재윤 · 김영록 · 변재일 · 김동철 · 배재정 · 박혜자 · 이석현 · 이종걸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이종걸 · 배기운 · 양승조 · 전병헌 · 장병완 · 변재일 · 김영환 · 김영주 · 우원식 · 신경민 · 김기준 · 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2. 9. 13 국방위원장 제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김희정 · 김한표 · 이재영 · 길정우 · 민현주 · 박인숙 · 권성동 · 김현숙 · 윤재옥 · 강은희 · 류지영 · 류성걸 · 이자스민 의원 발의)

9월 14일 아동 ·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이상민 · 윤후덕 · 배기운 · 김우남 · 유대운 · 이낙연 · 유기홍 · 민홍철 · 이연주 · 우윤근 · 정성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3 이상민 · 윤후덕 · 배기운 · 김우남 · 유대운 · 이낙연 · 유기홍 · 민홍철 · 이연주 · 우윤근 · 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3 김기식 · 홍익표 · 최민희 · 서영교 · 박홍근 · 추미애 · 김영주 · 박영선 · 최원식 · 이학영 · 김성주 · 김광진 · 남인순 · 서기호 · 최재성 · 이목희 · 윤관석 · 민병두 · 김현미 · 은수미 · 송호창 · 박완주 · 홍영표 · 정성호 · 이춘석 · 오영식 · 이인영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이한성 · 류성걸 · 김태호 · 조원진 · 박대동 · 신동우 · 류지영 · 나성린 · 이채익 · 유일호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유일호 · 이한성 · 류성걸 · 김태호 · 조원진 · 박대동 · 신동우 · 류지영 · 나성린 · 이채익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전정희 · 윤후덕 · 남경필 · 김동철 · 이에리사 · 김성주 · 유대운 · 전순옥 · 박민수 · 강동원 · 홍종학 · 이미경 · 최민희 · 민홍철 · 한정애 · 최동익 · 김윤덕 · 김재윤 · 정성호 · 백재현 · 오제세 의원 발의)

9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2012. 9. 13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장하나 · 강동원 · 김광진 · 김미희 · 김승남 · 김영주 · 김태년 · 박인숙 · 배기운 · 신경민 · 유대운 · 유성엽 · 은수미 · 전정희 · 정성호 · 최동익 · 홍종학 의원 발의)

9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재외국민보호법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원유철 · 정의화 · 함진규 · 정갑윤 · 이재영 · 정희수 · 심윤조 · 윤명희 · 김영우 · 고희선 · 김재경 · 남경필 · 정문헌 · 김태환 · 이균현 의원 발의)

9월 14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2012. 9. 13 교육과학기술위원회장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3 남인순 · 이미경 · 최원식 · 김성주 · 유대운 · 전순옥 · 배기운 · 유기홍 · 전정희 · 홍종학 · 민홍철 · 문병호 · 이학영 · 양승조 · 정성호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3 남인순 · 이미경 · 최원식 · 김성주 · 유대운 · 전순옥 · 배기운 · 전정희 · 홍종학 · 민홍철 · 문병호 · 이학영 · 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2012. 9. 13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김재원 · 권성동 · 김세연 · 최봉홍 · 김을동 · 유승우 · 김상훈 · 조원진 · 이한성 · 김정록 · 정문헌 · 박대동 · 김동완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4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제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강창일 · 배기운 · 전병헌 · 전정희 · 김관영 · 신장용 · 인재근 · 김기식 · 김윤덕 · 이미경 · 유기홍 · 박민수 · 김재윤 · 최재천 · 최규성 · 조정식 · 정성호 · 홍종학 · 문병호 · 우원식 · 민홍철 · 이낙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심재권 · 김윤덕 · 김태년 · 김형태 · 문병호 · 박인숙 · 박혜자 · 배기운 · 배재정 · 오제세 · 이상직 · 이재오 · 전병헌 · 전정희 · 진성준 · 최민희 · 홍종학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4 이명수 · 김을동 · 정희수 · 김정록 · 강기윤 · 李宰榮 · 정의화 · 강석호 · 신학용 · 문정림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4 이명수 · 김을동 · 정희수 · 김정록 ·

강기윤 · 李宰榮 · 정의화 · 강석호 · 신학용 · 문정림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김희정 · 김한표 · 이재영 · 이자스민 · 길정우 · 민현주 · 박인숙 · 권성동 · 김현숙 · 윤재옥 · 강은희 · 류지영 · 류성걸 의원 발의)

9월 17일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4 이명수 · 김을동 · 정희수 · 김정록 · 강기윤 · 李宰榮 · 정의화 · 강석호 · 신학용 · 문정림 의원 발의)

9월 1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4 김종태 · 윤진식 · 이만우 · 유성엽 · 문대성 · 송광호 · 한기호 · 민홍철 · 송영근 · 김근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나성린 · 이현승 · 김성찬 · 金永柱 · 김장실 · 이종훈 · 김춘진 · 이한성 · 정성호 · 황영철 · 유기준 · 송광호 · 황진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4 정청래 · 김민기 · 유대운 · 이춘석 · 배기운 · 김태년 · 이미경 · 홍종학 · 김재운 · 강동원 · 김성곤 · 심재권 · 정성호 · 백재현 · 최원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김종태 · 윤진식 · 이만우 · 유성엽 · 문대성 · 송광호 · 김근태 · 한기호 · 민홍철 · 송영근 · 이에리사 의원 발의)

9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2. 9. 14 정부 제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이완영 · 경대수 · 김상민 · 김성태 · 민홍철 · 박성호 · 서용교 · 이종훈 · 주영순 · 최봉홍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이명수 · 정희수 · 강기윤 · 李宰榮 · 정의화 · 강석호 · 김을동 · 김정록 · 이채익 · 박인숙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김상희 · 우윤근 · 이미경 · 조정식 · 원혜영 · 김경협 · 유승희 · 장하나 · 우원식 · 설훈 · 김동철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김상희 · 우윤근 · 이미경 · 조정식 · 원혜영 · 김경협 · 유승희 · 장하나 · 우원식 · 설훈 · 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7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4 박영선 · 최원식 · 이춘석 · 이연주 · 한정애 · 이석현 · 박남춘 · 이인영 · 김기식 · 홍종학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안효대 · 유승우 · 김정록 · 정희수 · 이노근 · 황진하 · 이윤석 · 민홍철 · 김장실 · 남경필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4 정부 제출)

9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정청래 · 김민기 · 유대운 · 이춘석 · 배기운 · 이찬열 · 이미경 · 홍종학 · 김재운 · 강동원 · 김성곤 · 심재권 · 문병호 · 정성호 · 백재현 · 최원식 의원 발의)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강동원 · 김경협 · 김성곤 · 김우남 · 김재운 · 김춘진 · 김현미 · 노웅래 · 서기호 · 신경민 · 심상정 · 우원식 · 유성엽 · 윤후덕 · 이미경 · 이윤석 · 이찬열 · 이춘석 · 전정희 ·

정진후·최동익·최민희·홍의락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최민희·윤후덕·윤호중·박원석·
한정애·강동원·정청래·유성엽·김현미·
전순옥·김기준·전정희·박병석·정성호·
김재운 의원 발의)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최민희·윤후덕·윤호중·박원석·
한정애·강동원·정청래·유성엽·김현미·
전순옥·김기준·전정희·박병석·정성호·
김재운 의원 발의)

韓國教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최민희·윤후덕·윤호중·박원석·
한정애·강동원·정청래·유성엽·김현미·
전순옥·김기준·전정희·박병석·정성호·
김재운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문대성·여상규·김세연·최봉홍·
김재원·신성범·이에리사·안홍준·김태원·
권은희·김한표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오제세·김우남·홍종학·최동익·
이낙연·문병호·박민수·심재권·진성준·
김춘진·이석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서영교·정성호·신경민·유대운·
김승남·이상민·김경협·이상직·유기홍·
민홍철·최민희·한정애·전해철·김춘진·
김성곤·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김상훈·정희수·유승우·신성범·
김한표·하태경·이한성·조원진·김재원·
김세연·박대동·윤재욱 의원 발의)

9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김성곤·심재권·이에리사·유대운·
배기운·최원식·민홍철·정성호·김승남·
박민수·강동원·김장실·안홍준·주승용 의원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윤상현·권은희·김중훈·박대출·
박덕흠·손인춘·유기준·윤영석·윤재욱·
이만우·이이재·이진복·이학재·홍지만·
황영철·이현승·정문현·조명철·조원진·
조해진·최봉홍·이자스민·이에리사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
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
배기운·김태년·김영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
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
배기운·김태년·김영주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
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
배기운·김태년·김영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
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
배기운·김태년·김영주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발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김선동·김제남·이상규·김춘진·
김재연·김미희·노회찬·오병윤·이석기·
김승남·정진후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김선동·김제남·이상규·김춘진·
김우남·김재연·김미희·노회찬·오병윤·
이석기·김승남·정진후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8일 농림수산물위원회에
회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강기정 · 박완주 · 신장용 · 백재현 · 박홍근 · 김우남 · 김춘진 · 김동철 · 이원욱 · 배기운 · 김태년 · 김영주 의원 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강기정 · 박완주 · 신장용 · 백재현 · 박홍근 · 김우남 · 김춘진 · 김동철 · 이원욱 · 배기운 · 김태년 · 김영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이인영 · 김우남 · 이낙연 · 배재정 · 박원석 · 김태년 · 이미경 · 김경협 · 김승남 · 최규성 · 박영선 · 홍종학 · 이상직 · 박홍근 · 유대운 · 홍영표 · 진성준 · 김현미 · 김민기 · 은수미 · 인재근 · 유은혜 · 최원식 · 이만우 · 이목희 · 김재윤 · 김재원 · 우상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노철래 · 김을동 · 이우현 · 정갑윤 · 이채익 · 이현재 · 권성동 · 염동열 · 민병주 · 손인춘 · 이한성 · 박인숙 의원 발의)

9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전하진 · 김세연 · 강석훈 · 이현재 · 홍지만 · 김상민 · 정병국 · 문대성 · 권은희 · 김동완 · 이종훈 · 김기선 · 하태경 · 김한표 · 김성태 · 박성호 · 손인춘 · 이이재 · 서용교 · 정성호 · 강은희 · 박인숙 · 서상기 의원 발의)

9월 18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7 정부 제출)

9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유기홍 · 김세연 · 김태년 · 김태원 · 박성호 · 서상기 · 유성엽 · 유은혜 · 이용섭 · 정성호 · 정진후 의원 발의)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서상기 · 이철우 · 송영근 · 김세연 · 남경필 · 윤명희 · 김을동 · 박성호 · 박인숙 · 정두언 · 권은희 · 민병주 · 이종진 · 이재영 · 강은희 의원 발의)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김춘진 · 배재정 · 김우남 · 민홍철 · 최원식 · 유성엽 · 김성곤 · 유대운 · 홍종학 · 오제세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김춘진 · 배재정 · 김우남 · 민홍철 · 김성곤 · 유대운 · 홍종학 · 오제세 · 유성엽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서상기 · 박성호 · 이재영 · 정두언 · 이철우 · 김세연 · 남경필 · 강은희 · 민병주 · 권은희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김춘진 · 배재정 · 김우남 · 민홍철 · 최원식 · 김성곤 · 유대운 · 홍종학 · 오제세 · 유성엽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노웅래 · 장병완 · 김경협 · 신경민 · 전병헌 · 정청래 · 김춘진 · 우윤근 · 이석현 · 신장용 · 김재윤 의원 발의)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황주홍 · 주승용 · 김동철 · 이낙연 · 김성곤 · 우윤근 · 김우남 · 김재윤 · 문병호 · 김영록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전하진 · 하태경 · 김한표 · 김성태 · 박성호 · 김희국 · 유일호 · 문대성 · 손인춘 · 강석훈 · 이이재 · 서용교 · 이자스민 · 강은희 의원 발의)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조해진 · 이재영 · 이완영 · 박민식 ·

김태흠 · 김영우 · 김학용 · 김도읍 · 이현승 · 권성동 · 권은희 · 안덕수 · 김한표 · 이한성 · 이만우 · 염동열 · 이우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신학용 · 변재일 · 김동철 · 오제세 · 김관영 · 박남춘 · 양승조 · 유승민 · 이에리사 · 김세연 의원 발의)

9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균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8 이재균 · 김민기 · 김영주 · 김춘진 · 이채익 · 이노근 · 김성곤 · 박인숙 · 이종진 · 정성호 · 유성엽 의원 발의)

私道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1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이학영 · 김태년 · 이춘석 · 도중환 · 장하나 · 최원식 · 진성준 · 배재정 · 박남춘 · 전병헌 · 김기식 · 김성주 의원 발의)

9월 19일 아동 ·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

유동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8 박홍근 · 변재일 · 배재정 · 도중환 · 김성주 · 이찬열 · 정진후 · 김광진 · 이연주 · 최규성 의원 발의)

9월 19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2012. 9. 19 의장 제의)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7일간)

○의안 심사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창중) 인사청문요청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진성) 인사청문요청안
(이상 2건 2012. 8. 23 대법원장 제출)

(이상 2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강일원)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김이수)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안창호) 선출안

(이상 3건 2012. 9. 4 의장 제의)

(이상 3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이상 3건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 · 김이수 ·

안창호)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0 이원욱 · 강기정 · 강동원 · 김성곤 · 김성주 · 노영민 · 박홍근 · 신장용 · 이미경 · 전정희 · 홍의락 의원 발의)

9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

(2012. 8. 13 이현재 · 이채익 · 윤명희 · 박대동 · 권은희 · 현영희 · 송영근 · 김중태 · 주영순 · 김상훈 · 손인춘 · 이완영 · 이병석 · 민병주 · 강은희 · 서용교 · 이이재 · 강석훈 · 이철우 · 홍일표 · 여상규 · 정우택 · 박대출 · 이주영 · 이만우 · 윤진식 · 정희수 · 김태원 · 송광호 · 이에리사 의원 발의)

9월 18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12. 9. 11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으로부터 정진후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12. 9. 11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으로부터 정진후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9월 1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에 관한 청원

(2012. 9. 11 서울 송파구 장지동 612-8 유승관 외 324인으로부터 유일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17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9. 14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태호로부터 임수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추천의뢰서 제출

독립기념관 이사 추천의 건

(2012. 9. 17 독립기념관장 제출)
정무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산림 정책기조의 변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 문제 및 저소득층
입학전형료 감면 문제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12. 9. 12 황영철 의원 제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 ISD제출의
향서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서**

(2012. 9. 12 김영주 의원 제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이직에
관한 질문서**

**중앙행정기관의 고졸, 전문대졸 채용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12. 9. 12 강기윤 의원 제출)

**예산기준과 및 지역예산과의 예산심의 자료제출
촉구의 건에 관한 질문서**

(2012. 9. 13 안민석 의원 제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에 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12. 9. 17 진성준 의원 제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
사업 등에 관한 질문서**

(2012. 9. 17 강기윤 의원 제출)

공무원 안전보장 등에 관한 질문서

(2012. 9. 18 강기윤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BMW코리아의 차량수입가격 조정현황 관련
자료 촉구의 건에 관한 질문서**

(2012. 9. 7 안민석 의원 제출)

**예산기준과 및 지역예산과의 예산심의 자료제출
촉구의 건에 관한 질문서**

(2012. 9. 13 안민석 의원 제출)

이상 2건 9월 18일 제출 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취득세 감면액 보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9. 14 정부 제출)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9. 19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2년도 연차보고서

(2012. 9.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
위원회 제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해양생태계 보전계획 집행결과 보고서

(2012. 9. 12 정부 제출)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2012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2. 9. 18 금융위원회 제출)

정부위원회에 회부